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05
----------	-------

발의연월일 : 2026. 9. 16.

발 의 자 : 김석기 · 박덕흠 · 엄태영
김정재 · 성일종 · 김재섭
박성훈 · 김선교 · 김기현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상호주의)”를 “(상호주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공동으로 외국 정부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토지 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u>제한할 수 있다</u> .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상호주의 등) ① ----- ----- ----- ----- ----- ----- ----- ----- -----제한하여 야 한다. ----- ----- ----- -----.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공동으로 외국 정부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토지 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야 한다.